시 험 의 뢰 서(국방/공공)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필수 기재사항 |  |  | 신청일: 20 . . . | 유기 | 기기 | 역학 | 화학 | 혼용 | 세탁 | 무기 | 연구 | 항균 | 법인 |
| **신****청****자** | 회 사 명 |  | 대 표 자 |  | **세금계산서** | 회 사 명 |  |
| 사업자번호 |  | 대 표 자 |  |
| 담 당 자 |  | 사업자번호 |  |
| TEL |  | 담 당 자 |  |
| E-mail |  | E-mail |  |
| **시 료 명** |  | H.P |  |
| **제 출 처** |  | **성적서 수령** | [ ]  이메일 [ ]  우편 [ ]  택배(착불) |
| **시료번호(로트번호)** |  | **성적서 용도** | [ ]  제출용 [ ]  품질관리 [ ] 기타 |
| **색 상** |  | **봉인 시료 여부**  | [ ]  O [ ]  X |
| **제시혼용률** |  | **전산 등록 여부** | [ ]  O [ ]  X |
| **규격번호** |  |  **시료 반환** | [ ]  결과 카드(시험시편)반환 |
| **제품형태** | [ ]  원단 [ ]  봉제품 [ ]  부자재 | [ ]  잔여 시료 반환 |
| **시험규격** | [ ] KS [ ] AATCC/ASTM [ ] ISO [ ] 기타 [ ] KOLAS성적서  |
| **성적서 발급****(접수일 제외)** | [ ] 보통(4일)[ ] 입회(1일) | [ ] 지급(2일)[ ] 장기 | **원본** | [ ] 국문 [ ] 영문  |
| **부본수** | 국문( ) 영문( ) \* 추가 필요 부본수 기재 |
| **\*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∙이용 동의사항에 동의합니다. 신청인: (서명)** |
| **시 험 항 목** | **시료수** | **시 험 방 법** | **시 험 항 목** | **시료수** | **시 험 방 법** |
| **조성** | 혼용률 / 감별 |  |  | **물성****시험** | 질량 (무게) |  |  |
| 가죽 감별 |  |  | 번수 |  |  |
| **염색****견뢰도** | 일광 |  |  | 밀도 |  |  |
| 세탁 |  |  | 필링 |  |  |
| 마찰 |  |  | 인장강도 |  |  |
| 땀 |  |  | 인열강도 |  |  |
| 물  |  |  | 파열강도  |  |  |
| 드라이클리닝 |  |  | 실미끄럼저항도 |  |  |
| 일광 및 땀 복합 |  |  | 스낵성 |  |  |
| **치수****변화율** | 세탁 |  |  | **KC 시험** | pH |  |  | **KC****전(全)****항목**[ ]  |
| 드라이클리닝 |  |  | 폼알데하이드 |  |  |
| 아이론 |  |  | 아릴아민 |  |  |
| **완제품** | 내세탁성 |  |  | 알러지성 염료 |  |  |
| 내드라이클리닝 |  |  | 유기주석화합물(TBT) |  |  |
| **다운****시험** | □조성혼합률 / □우모혼합률 / □충전도 | **기능성** | □내수도 / □발수도 / □투습도 / □박리강도 / □마찰대전압 |
| □ 보온성 | □흡수속도 / □건조속도  |
| □ 기타 다운 시험: | □항균시험 / □소취시험 / □자외선차단 |
| **기타** | **► 기준서 첨부 필수** |

|  |  |
| --- | --- |
|  | 결재 (서명) |

|  |
| --- |
| 결재 (서명) |
| (접수 담당) | (접수 확인) |
| (결과 담당) | (결과 팀장) |

※ 혼용률, 유해물질 시험 등은 시험 결과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.

※ 용도가 KOLAS용이 아닌 경우 KS Q ISO/IEC 17025 및 KOLAS 인정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본 신청서의 기입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뢰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뒷면의 약관을 충분하게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KOLAS 인정항목에 대한 "적합성 진술"을 원하는 경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 ([ ]  필요 [ ]  불필요)

 **KOTITI시험연구원 약관**

**제1장 총 칙**

**제1조 (목적 및 적용 범위)** ① 이 약관은 섬유, 수질,식품,전기전자제품,화장품,의약외품 및 기타 관련 제품에 대하여 사단법인 KOTITI 시험연구원(이하 ‘연구원’이라 한다)이 실시하는 시험/검사, 검사 (이하 ‘시험/검사’라 한다)에 관하여 시험/검사의 신청, 실시 및 성적서 발급 등 시험/검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시험/검사와 관련하여 연구원과 시험/검사를 신청한 자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 사이의 권리․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이 약관은 연구원이 신청인의 신청이나 의뢰에 따라 국내외에서 실시하는 모든 일반 시험/검사에 대하여 적용된다. 다만, 연구원의 인증(안전인증 등)에 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약관 등 별도의 정함에 따른다.

**제2조 (정의)**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아래 각 호와 같다.

 1. ‘시험/검사’ 라 함은 연구원이 섬유,수질,식품,전기전자제품,화장품,의약외품 및 기타 관련 제품(이하 ‘원재료’ 라 한다)에 대하여 실시하는 이화학적․위생공학적․물리학적․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 측정․검사․분석․검정 또는 검토를 말하며 의뢰검사와 의뢰시험/검사분석 및 감정 등을 포함한다.

 2. ‘시험/검사의 신청’이라 함은 개인․단체․법인이 연구원에 시험/검사의 실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.

 3. ‘시험/검사계약’이라 함은 신청인이 연구원에 시험/검사를 신청하고 연구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연구원과 신청인 사이에 체결되는 시험/검사 실시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.

 4. ‘시료’라 함은 시험/검사 대상물 등에서 시험/검사의 실시를 위해 추출한 물건을 말한다.

 5. ‘모집단’이라 함은 ‘시료’인 제품이 속한 동일한 종류의 제품 집단을 말한다.

 6. '시험검사원 ‘이라 함은 연구원의 피용인 또는 수임자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시험/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연인을 말한다.

 7. ‘성적서’라 함은 연구원이 실시한 시험/검사의 결과(성적)를 기재한 보고 서면을 말한다.

**제2장 시험/검사계약**

**제3조 (시험/검사계약의 체결)** ① 시험/검사계약은 신청인이 소정의 ‘시험/검사분석신청서’, ‘시험/검사검사신청서’ 등 연구원의 소정 신청서 양식(이하 ‘신청서’라 함)에 의하여 시험/검사를 신청하고 연구원의 신청접수 부서에서 접수를 완료하거나 신청인과 연구원이 ‘시험/검사분석계약서’, ‘의뢰시험/검사약정서’ 등 서면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② 전항의 신청 접수 또는 별도 계약 체결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, 합의나 계약은 시험/검사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.

③ 제1항의 신청 접수 또는 별도의 계약 체결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의 시료 제출, 연구원의 시료 보관, 시험/검사의 실시 등 행위가 있다고 하여 이로써 시험/검사계약의 체결을 갈음하거나 연구원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.

④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및 제17조의 성적서에 기재된 사항 외에 신청인이 시험/검사계약의 체결에 있어 연구원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시험검사원과 별도로 합의하였거나 그 시험검사원이 신청인에게 제시․약정한 사항은 시험/검사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

⑤ 제1항의 시험/검사계약을 체결한 신청인 외의 자에 대하여 연구원은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**제4조 (연구원의 거절․해제 등)**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원은 신청서의 접수를 거절하거나 시험/검사계약의 체결에 불응할 수 있고,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내지 확인되고, 연구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시험/검사계약이라도 이를 해제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 1. 천재지변, 전란, 노사분규, 법령의 규제, 무역분쟁, 연구인력이나 재료 확보의 어려움, 기계․설비의 고장,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시험/검사를 시행․완료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

 2. 시험/검사의 실시가 연구원의 내부 규정,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경우

 3. 시험/검사를 실시할 가치(필요)가 적거나 시험/검사 목적의 부당성 기타 시험/검사 실시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

 4. 연구원이 시험/검사를 실시할 기술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
② 전항의 시험/검사계약 해제 또는 기간 연장은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
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연구원의 거부․해제 또는 기간 연장이 연구원의 고의•중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연구원의 조치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연구원의 고의•중과실이 없는 한 연구원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.

**제5조 (시험/검사의 신청)** ① 신청인은 시험/검사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에 아래 각 호의 사항들을 진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. 필요한 경우 별도의 부전지(을지)를 사용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
 1.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

 2.시험/검사의 시행착오 또는 오류를 피하거나 시험/검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원이 특별히 유의하거나 알아야 할 사항

 3. 시험검사원의 건강, 보건,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

② 신청인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진실함을 보증한다.

③ 신청인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허위 또는 부실한 내용이 있거나 그 기재를 누락․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태(시험/검사의 시행착오, 시험/검사비용의 증가, 시험/검사의 오류, 시험검사원에 대한 위해, 건강 침해 등)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.

**제6조 (시험/검사계약의 해지)**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/검사에 착수한 후라도 시험/검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연구원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하였으나, 신청인이 그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시험/검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신청인이 파산, 법정관리, 화의, 중요자산에 대한 가압류, 압류 기타 소송을 당하여 연구원에 지급할 수수료 등 시험/검사 비용을 충당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

② 신청인은 연구원이 시험/검사에 착수하기 전 또는 그 후에라도시험/검사 실시가 종료(성적서의 발급 이전에 실질적인 시험/검사 절차가 종료된 단계를 말한다)되기 전에는 그때까지 소요된 수수료 비용 전액을 지급(정산)하고 시험/검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본 조의 시험/검사계약 해지는 해지의 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.

④ 본 조의 해지에 대하여 제4조 제3항, 제4항을 준용한다.

**제3장 시험/검사 비용**

**제7조 (수수료 비용의 종류와 산정)** ① 신청인은 시험/검사 실시에 대한 대가로 연구원에 수수료를 지급한다.

②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실시수수료 기타 연구원이 정한 항목으로 구성된다.

③ 수수료의 가액은 연구원이 당해 시험/검사의 항목, 복잡성․난이도, 소요시간, 인건비 등 물가수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.

④ 제5조 제3항, 제11조 제4항, 제13조 제2항 및 기타 연구원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비용이 증가한 경우 연구원은 그 증가한 비용 전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.

⑤ 시험/검사가 연구원 외의 장소에서 실시되거나 시험/검사를 위하여 출장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은 수수료 외에 연구원이 정한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**제8조 (수수료 비용의 지급 시기와 방법)** ① 수수료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선지급한다. 다만 연구원은 당해 시험/검사의 특성 기타 수수료의 가액을 미리 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험/검사 실시 중 또는 종료 후에 그 가액을 산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험/검사 실시 중 또는 종료 후에 후불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출장비는 연구원의 청구를 받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전항들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신청인에게 수수료 비용을 선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후불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일체의 수수료 비용은 대한민국의 원화로 표시된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, 무통장입금, 신용카드 등 연구원이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납부한다.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, 비거주인,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외화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환율은 연구원과 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**제9조 (수수료 비용의 담보)** ① 연구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 비용을 완제 받지 못한 경우 시험/검사의 실시, 성적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수수료 비용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.

 1. 신청인이 시험/검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연구원에 제공한 시료 기타 일체의 물건

 2. 연구원이 시험/검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시료 기타 일체의 물건

③ 유치권이 미치는 전항의 물건은 그 소유권이 신청인이 속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.

④연구원은 유치권의 대상인 물건이 보관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의 정도가 심한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물건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청인이 이 약관 및 상법, 기타 법령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하거나 배상하여야 할 모든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준용된다.

**제10조 (시험/검사 비용의 정산 및 환불)** 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/검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이미 지급된 시험/검사 수수료, 출장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.

 1. 시험/검사수수료 : 기본수수료(시험/검사를 접수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수수료)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실시수수료(실제 시험/검사 수행을 위해 각 시험항목 별로 책정한 수수료 등)는 연구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.

 2. 출장비 : 출장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전액을, 출장에 착수한 경우 출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이 정한 기준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.

② 제8조 제1항 단서, 제3항에 따라 수수료 비용을 후불로 지급하게 할 경우 연구원이 신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액의 산정에 대하여도 전항을 준용한다.

③ 제6조에서 정한 연구원 또는 신청인의 시험/검사계약 해지에 의한 시험/검사 중단의 경우에도 제1항, 제2항을 준용한다.

④ 제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연구원의 철회에 의하여 시험/검사 착수 전에 시험/검사계약이 철회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, 시험/검사 착수 후에 시험/검사계약이 철회된 경우에는 기본수수료는 전액을 반환하고 실시수수료는 연구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. 출장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.

⑤ 본 조에 따른 수수료 비용의 정산 및 환불 의무는 신청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.

**제4장 시험/검사의 실시**

**제11조 (시험/검사의 실시)** ① 시험/검사는 연구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실시한다. 다만 신청인이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이 적절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험/검사의 방법은 신청인이 제시하거나 신청인과 협의하여 연구원이 정한다.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원은 다른 시험/검사 방법을 정할 수 있다.

③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험/검사를 실시하는 경우, 신청인은 시험/검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고 충분한 시험/검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④ 신청인이 전항의 시험/검사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구원은 전적으로 연구원의 판단에 따라 시험/검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.

⑤ 제4항의 경우 또는 신청인이 시험/검사방법의 선택을 연구원의 재량에 위임한 경우, 연구원의 시험/검사방법이 업계의 통상적인 방법 및 수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, 신청인은 시험/검사방법의 선정과 관련하여 연구원에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
**제12조 (시험/검사의 중단, 보류)** ① 연구원은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연구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험/검사의 실시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시험/검사 중단, 보류가 장기화되어 시험/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인 또는 연구원은 시험/검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**제13조 (시료 등의 제공)** ① 신청인은 연구원에 시료 또는 시료가 속한 물건을 제공함에 있어 시험/검사의 조건에 적합하고 안전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신청인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사태(시험/검사의 시행착오, 수수료 비용의 증가, 시험/검사의 오류, 시험검사원에 대한 위해, 건강 침해 등)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.

③ 신청인은 제공하는 시료 또는 시료가 속한 물건에 대하여 연구원의 시료 채취, 시험/검사 실시, 유치권의 행사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권리 주장이나 법적 장애가 없을 것을 보증한다.

**제14조 (시료 제공․채취의 요구)** ① 연구원은 신청인에게 시험/검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의 제공 또는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전항은 연구원이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시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.

③ 연구원은 제1항의 시료 제공 또는 채취를 요구함에 있어 연구원이 정하는 대상, 종류(외관검사 결과에 대한 참고용, 불량견본 시료 등 포함), 분량, 방식(무작위 샘플링 등 포함)에 의한 시료의 제공 또는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연구원은 제1항의 시료 채취에 있어 시료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가 속한 모집단의 물건에 대하여 열람, 분류, 조사, 검색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⑤ 시험/검사를 위하여 신청인이 연구원에 제공하거나 연구원이 채취한 시료 및 시료를 채취하고 남은 것으로서 연구원이 보관하는 제품, 물건은 신청인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연구원의 소유에 속한다. 다만, 이 경우 연구원은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수 의사를 물은 후 그 기간 내에 신청인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, 연구원이 보관하는 신청인의 제품, 물건의 소유권은 연구원에게 속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.

**제15조 (시료의 처분․폐기)** ① 시험/검사 실시로 파손․소멸되지 않은 시료는 신청인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신청인 기타 권리자의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고, 연구원의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파쇄․폐기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연구원은 사전에 신청인 기타 권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인 기타 권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, 소유권은 연구원으로 이전된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남아 보관 중인 제품, 물건에 대하여도 시료 채취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전항을 준용한다.

③ 연구원은 전항들에도 불구하고 부패, 오염, 파손 등의 사유로 보관이 어렵거나 건강․안전에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사후에 그 사실을 신청인이게 고지하도록 한다.

④ 전항들에 따라 시료 기타 물건을 폐기 등 처분하는 경우 그 비용이 통상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고, 비용의 과다가 물건의 본래적 특성이나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써 기타 연구원의 과실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신청인이게 그 회수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비용 전액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**제16조 (재시험/검사)** ① 신청인은 연구원의 분류상 ‘의뢰검사’에 속하는 시험/검사에 한하여 시험/검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시험/검사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전항의 재 시험/검사 청구가 있을 경우 시험/검사의 특성상 재시험/검사가 불가능․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본 조의 재 시험/검사는 재시험/검사로 소요되는 수수료 비용의 지급을 면제하지 않는다. 다만 연구원이 재시험/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의 시험/검사 결과와 중요한 부분에서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귀책사유가 연구원에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재시험/검사와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.

**제5장 성적서**

**제17조 (성적서의 발급)** ① 성적서는 연구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원장의 명의로 정본 1부로 발급된다.
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원은 성적서 부본을 복수로 발급하거나 정본을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.

 1. 성적서 정본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부본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

 2. 시료 또는 시험/검사항목이 다수로서 1부의 성적서로 발급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연구원이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분할 발급하는 경우

③ 전항에 따라 성적서 부본 또는 분할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부본 또는 분할성적서의 전체 발급 수량 대비 당해 성적서의 순번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④ 본 조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발급된 성적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연구원의 성적서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.

**제18조 (성적서의 사용 제한)** ① 신청인은 연구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아래와 같은 용도로 성적서를 공개․사용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1. 방송․신문․잡지 등 언론을 통한 보도(공표) 또는 홍보(광고)

 2. 상품의 판촉용 광고, 홍보 활동에의 이용

 3. 각종 제조자 단체, 소비자 단체, 기타 시민단체에 대한 제공

② 전항의 공개․사용․제공 금지는 성적서의 전재 외에 일부 게재(설명), 요약 게재(설명), 사진 또는 영상의 현출 등 방식으로 공개․사용․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.

③ 성적서가 신청인에 의하여 소송, 중재, 화해 등 분쟁 절차에서 증거나 관련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, 연구원은 신청인의 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지원과 설명을 제공한다. 다만 이러한 지원과 설명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

④ 연구원이 ‘내부 참고용’임을 명시하여 발급한 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참고용 성적서의 경우 신청인은 제품의 제조공정․품질관리 등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의무를 지며 신청인이 위 용도를 넘어 사업 목적 기타 대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원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**제19조 (성적서 기재사항의 의의)** ① 성적서의 ‘합격’ 기타 시험/검사결과를 표시한 기재는 시험/검사의 대상이 된 시료가 특정․불특정 제품 또는 그 모집단에서 적절하고 평균적 방법으로 채취된 시료 자체에 대한 표시로만 인정된다.

② 성적서의 그 어떠한 기재도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.

 1. 시료를 채취한 특정․불특정 제품 또는 그 제품이 속한 모집단의 성능․품질․효능․형상 등에 관한 사항

 2.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단체․법인의 기술, 신용 등에 관한 사항

③ 성적서의 기재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원을 신청인의 대리인, 보조자 기타 이해당사자로 삼거나 그밖에 신청인과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연구원을 관련시킬 수 있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.

④ 성적서의 기재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의미를 넘어 제품의 제조자, 판매자의 계약상,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.

⑤ 연구원, 시험검사원이 성적서 외의 문서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인 기타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표한 시험/검사결과 역시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.

⑥ 제1항의 사항을 초과하는 사항이나 그 외의 사항과 관련된 추정이나 판단, 의사표시는 성적서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그 판단, 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재량과 책임 하에 있다.

**제6장 책임과 손해배상**

**제20조 (안전사고)** ① 시험/검사를 위하여 제공 또는 채취된 시료 및 시료를 채취하고 남아 보관 중인 제품 또는 물건 자체에서 도래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체의 위험은 연구원의 고의•중과실이 없는 한 신청인의 책임에 속한다.

② 시험검사원이 시험/검사를 실시하거나 시험/검사를 위하여 시료채취 등 준비행위를 하던 중에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의 원인이 전항의 위험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증명이 없고, 시험검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개입된 것이 아닌 한 신청인은 사고로 인하여 시험검사원이 입은 손실,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전항의 사고로 인하여 연구원이 시험검사원에게 적법하게 보상한 금원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.

**제21조 (제품의 파손)** ① 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이 연구원에 유보된 시료 또는 제품, 물건이 시험/검사의 실시 기타 준비행위 중에 파손, 망실된 경우 그것이 시험검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연구원 또는 시험검사원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② 전항에서 연구원 또는 시험검사원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배상금액은 파손․망실된 당해 시료 또는 제품, 물건의 취득원가(수입품의 경우 송장가격) 또는 지불된 수수료의 3배 중 적은 금액으로 국한한다.

**제22조 (시험/검사의 오류에 따른 책임)** 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성적서의 ‘합격’ 기타 시험/검사결과를 표시한 기재는 그 시험/검사의 직접 대상이 된 시료 자체에 대한 표시로만 인정되고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․보증하지 아니하므로, 연구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시험/검사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, 신청인 또는 제3자가 성적서의 기재사항을 제19조 제2항 각 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․보증하는 취지 그밖에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넘는 취지로 인식․간주․이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신청인 또는 제3자의 손실․손해(신청인 또는 제3자가 그와 같은 취지로 인식․간주․이용하여 이루어진 제품의 양산, 제조설비․공정의투자․변경,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청인 또는 제3자의 손실․손해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② 제5조 제3항, 제11조 제3항, 제13조 제2항 등 시험/검사의 오류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고, 연구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연구원은 시험/검사의 오류에 따른 직․간접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 및 전항은 연구원이 발급한 성적서 기타 시험/검사 결과를 사용하거나 이와 관련되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신청인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.

④ 신청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책임 배제가 성적서 기타 연구원의 시험/검사 결과는 제19조 제1항의 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사항이나 그 외의 사항과 관련된 추정이나 판단, 의사표시는 전적으로 그 판단, 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재량과 책임 하에 있는 점 및 시험/검사는 언제나 오류를 내포할 수 있다는 불가피성에 기인한 것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 ⑤ 신청인은 연구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험/검사의 오류를 사유로 수수료 등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**제23조 (구상)**시험/검사의 오류가 제5조 제3항, 제13조 제2항 기타 신청인의 부주의나 과실,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성적서의 무단 사용 기타 이 약관 규정의 위배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, 신청인은 연구원이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험/검사의 오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행한 보상금, 배상금 기타 소송비용(변호사보수 포함)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.

**제24조 (그 밖의 법적 책임 및 소멸시효)** ① 제20조 내지 제22조의 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연구원, 시험검사원의 불법행위, 채무불이행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이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등 책임은 연구원, 시험검사원 기타 피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면책한다.

**제7장 약관의 효력, 해석, 분쟁 해결 등**

**제25조 (약관의 적용과 효력)** ① 이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 신청서․계약서에서 달리 정함이 없거나 연구원의 특별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약관이 적용된다.

② 연구원의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지 않은 시험검사원과 신청인 사이의 그 어떤 합의와 계약으로도 이 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. 이 약관의 배제는 오로지 연구원 원장 명의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가능하다.③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. ④ 이 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․수정하는 특별약관, 서면 합의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.

**제26조 (준거법․언어)** ① 이 약관 및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․협약․협정 기타 연구원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일체의 서면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한국어로 체결․작성되어야 한다.

② 전항의 약관․계약․협약․협정․서면 등의 해석에 있어서도 한국의 법령이나 판례․상관습을 준거로 한다.

③ 제1항의 약관․계약․협약․협정․서면 등이 외국어로 작성되거나 번역되는 경우에도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한국어로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.

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배하여 외국법 및 외국어를 준거법 또는 언어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.

**제27조 (분쟁의 해결절차 및 관할)** ① 이 약관 또는 약관이 적용되는 시험/검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분쟁은 1차로 당사자간의 조정, 중재, 화해 등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.

② 전항의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.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 합의를 통해 전속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.

**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**

**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 :**우리 연구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.

① 시험/검사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시험/검사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

   - 시험/검사 등 연구원의 시험/검사 제공 관련 신청, 변경, 성적서 발송, 회원가입, 시험/검사 관련 문의 등을 포함한 이용계약 관련 사항의 처리 및 기타 시험/검사 관련 이메일, SMS, FAX 등을 통한 정보제공 사항

   - 대금 결제, 청구서 발송, 전자세금계산서 청구, 요금 추심 등 요금 결제 및 정산에 관한 업무

② 고객 관리 :시험/검사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, 개인 식별,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, 가입 의사 확인,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, 연령확인,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, 고지사항 전달

③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: 우리 연구원 소식 및 신규 사업 소개,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시험/검사 제공 및 광고게재, 접속 빈도 파악, 회원의 시험/검사 이용에 대한 통계, 이벤트 등 광고 성 정보전달, 설문조사

**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**

① 수집항목

   - 계약자의 성명, 유무선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주소, 이메일 주소, 회원아이디, 비밀번호

   - 법정대리인의 성명, 유무선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주소

   - 요금납부자의 성명, 청구지 주소, 유무선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

   - 이용 중 생성정보 :시험/검사 이용기록, 접속 로그, 쿠키, 접속 IP 정보, 결제 기록

**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**우리 연구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
**4.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:**이용자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및 일부 시험/검사 제공이 제한됩니다.

**5. 개인정보 제공**

우리 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
1)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

2)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※ 본 약관 외의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연구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의해 처리되며, 연구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  - KOTITI 홈페이지(http://www.kotiti-global.com)의 하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

|  |
| --- |
| KOTITI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|
|  |
| KOTITI시험연구원은『개인정보 보호법』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.**1.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**1.1 서비스 신청 시 신청인에 대한 신원확인1.2 신청한 서비스 관련 변동사항 전달 및 처리결과 전송1.3 서비스 신청 건에 대한 요금의 결제 및 정산1.4 연구원 서비스 소개 및 영업활동**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**2.1 신청인의 이름2.2 주소2.3 전화번호2.4 휴대폰 번호2.5 팩스 번호2.6 전자우편 주소**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**5년**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**신청인은 KOTITI시험연구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단, 동의하지 않는 경우, KOTITI시험연구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**5. 개인정보의 제공**KOTITI시험연구원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신청이 신청한 서비스 업무 용도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, 아래의 경우,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5.1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5.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항에 따른 경우\* 본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20 년 월 일 성명: (인)**KOTITI시험연구원 귀하** |